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8
----------	-----

2023. 9. 19.(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2023년 9월 7일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용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정보 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어문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 띄어쓰기 반영(제명)
-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개정 반영(안 제1조)
- 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 용어 정리(안 제5조)
-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5조)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실기평가 응시수수료 면제(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 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수수료 면제로 정보 공개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로 정보 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제도 운용을 위한 조항을 개정함.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최근 4년간 정보 공개 수수료 징수현황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현재)
수납액	61,070원	54,000원	112,020원	61,550원

-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중 실기평가가 있는 과목 응시생의 실기평가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함.

< 2020~2023학년도 응시 수수료 현황 >

[단위: 원, 명, %]⁵⁾

구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기본 (A)	징수인원	2,051	2,696	2,303	2,426
	징수금액	51,275,000	67,400,000	57,575,000	60,650,000
실기평가 (B)	징수인원	49	88	54	135
	징수금액	490,000	880,000	540,000	1,350,000
총계 ⁶⁾ (C=A+B)	징수인원	2,051	2,696	2,303	2,426
	징수금액	51,765,000	68,280,000	58,115,000	62,000,000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실기평가 과목의 응시료를 실기평가하지 않는 과목의 응시료와 동일하게 징수하여 행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반영하여 제명을 개정

5) 기본응시수수료: 25,000원, 실기평가응시수수료: 10,000원 추가징수

6) 단, 실기평가 응시 수수료 징수 인원은 기본 인원과 중복되므로 총계에 합산하지 아니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어문 규정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개정함.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시행 2023. 2. 6.] [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9.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9. 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 **안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⁷⁾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⁸⁾

7)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별표 1>에서는 <수수료 징수금액(제2조 관련)>에서 <1. 응시 수수료 나.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 1인당 35,000원을> 삭제하고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원>으로 변경함.

< 2020~2023학년도 실기평가 응시 수수료 현황>

과목	응시인원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음악	16	25	12	20
미술	12	21	17	21
체육	21	42	25	33
물리				17
화학				17
생물				15
지구과학				12
합계	49	88	54	135

응시 수수료 총액	490,000	880,000	540,000	1,350,000
-----------	---------	---------	---------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제137조 및 139조에서 제156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 또한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정보 공개수수료 면제 대상에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 감시, 연구 목적, 공공기관에서의 이용 등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 <별표 1>의 ‘수수료 징수 금액’을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 응시료 35,000원 중 실기평가 수수료 10,000원을 감면하여 ‘수수료 징수 금액’을 25,000원으로 일괄 징수하는 것은 연간 수수료 총액이 100만원 내외의 차이로 세입의 손실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및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익이 크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실기평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 2020~2023학년도 실기평가 응시 수수료 총액 >

실기평가 응시수수료	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총액	490,000	880,000	540,000	1,350,000

- 아울러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u></p>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보호대상자</u></p> <p><u><신 설></u></p> <p>3.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p> <p>-----.</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em;"><u>지원대상자</u></p> <p>3.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사 정 경 쟁 시 험 수 수 료 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3. 2. 6.] [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